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TRUSTON 주주가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변경 사항:** ① KRX 시장 대표지수 방법론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2026. 11. 3.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	**2026. 9. 30. 기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	**2026. 9. 30.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	**2026. 9. 30. 기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KRX 시장 대표지수 방법론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비교지수 : KOSPI200 KOSPI200 지수의 개요 : KOSPI200 지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장지수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전체종목을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통신업, 금융업 등 8개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비중이 높은 종목을 우선 선정합니다. 지수산출의 기준일은 1990년	※ 비교지수 : KOSPI200 KOSPI200 지수의 개요 : KOSPI200 지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장지수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전체종목을 KRX 산업분류(KRICS)*를 기준으로 9개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비중이 높은 종목을 우선 선정합니다. 지수산출의 기준일은 1990년 01

		01 월 30 일로서 이때의 지수를 100pt 로 하여 산출합니다.	월 30 일로서 이때의 지수를 100pt 로 하여 산출합니다. *** KRX 산업분류(KRICS, , KRX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에너지화학, 소재, 산업재, 모빌리티, 정보기술, 금융 및 부동산, 소비재, 헬스케어, 미디어 및 콘텐츠 등 9 개 산업군으로 분류**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25 년 1 월 1 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

		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6. 9. 30. 기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27 기(2024.12.31) 제 26 기(2023.12.31)	**제28기(2025.12.31)** **제27기(2024.12.31)**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6. 9. 30. 기준**